병 무 청

’14년 국정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

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
1. 임상심리사 증원 등 자체적인 정신질환자 징병검사 시스템 개선책을 마련할 것	**가. 시정·처리결과** ○ 심리검사 전문 인력 증원, 전문성 강화 • 2차 심리검사 인력 13명 증원(’15. 6월) - 6급 4명, 7급 6명, 8급 3명 ※ 현행 27명 → 증원 40명(+13명) ○ ’15년 민간병원 위탁 심리검사 등 추가 예산 확보 • 민간병원 위탁검사 예산 증액(3억원) - 종합심리검사 대상 인원 1,000여명 추가 • 종합심리검사 도구 구매예산 확보(8천3백만원) ○ 현장과의 소통을 통한 심리검사 개선의견 수렴 • 군 관계관 초청 심리검사 설명회(’14. 7 ~ 11월) • 징병전담의사·군의관 간담회 개최(’14. 12월) • 징병검사직원 군 그린캠프 현장 방문(’14. 12월) • 국회 병영문화혁신특위 징병검사 현장 방문(’14. 12월) ○ 임상심리사 전문성 강화(’15. 4월) • 임상심리사 전문교육 실시 ○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(국방부령) 개정(’15. 1월) • 정신과 5급 판정 최저 치료경력 기준 조정 - 치료 경력 1년 이상 → 6개월 이상 ○ 심리검사 관련 징병검사 규정 개정(’15. 1월) • 2차 심리검사 결과 ‘정밀관찰자’ 경과 관리 -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 경과 관리 조항 신설 - 본인동의자 심리검사결과 가족 통보 • ‘정밀관찰자’ 중 ‘정상’ 판정자 심의위원회 회부 - 신체등위판정 심의위원회 대상 추가 등

시정・처리요구사항	시정・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
	나. 향후 추진계획 ○ 심리검사 전문 인력 증원 및 전문성 강화('16년 ~) • 종합심리검사 인력 증원(47명) •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증원(10명) ○ 병무청 자체 종합심리검사 제도 도입(중기과제) • 민간병원 수준의 정밀검사 체계 마련

시정・처리요구사항	시정・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
2. 스위스·이스라엘 사례를 참고하여 병역의무자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방법의 다양화 및 인성검사 도구개선 등 병역처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	**가. 시정・처리결과** ○ 심리검사 도구개선(KIDA 협조) ('15. 1월) • 인성검사 문항 확대 - 현행 183문항 → 개선 203문항 • 인성검사 결과 분류 개선 : 사고예측 분류 추가 - 현행 : 양호, 정밀진단, 반응왜곡 - 개선 : 양호, 사고예측, 정밀진단, 반응왜곡 • 사고관련 척도 가해·피해 위험군 특성 추가 반영 - 지배 : 냉담, 적개심, 지배 등 가해 위험군 특성 - 소외 : 낮은 주장성, 복종성 등 피해 위험군 특성 ○ 질병상태 문진표 심리검사 문항 조정('15. 1월) • 심리검사 문항 확대 - 현행 5문항 → 개선 7문항 등 ○ 외국 심리검사 사례 조사, 제도 개선 참고 • 스위스, 이스라엘 등 8개국 사례 조사 - 심리검사 결과 병역처분 반영 사례 등 ○ 중장기적으로 연간 수검인원(약 36만명) 규모 및 소요시간 등 고려, 검토 필요 • 징병검사 시간 과다 소요 - 체력검사 포함시 : 1.5일(현행 반일) • 예산 및 공간·인력 등 소요 - 의무자 여비 : 56억 → 100억 - 체력검사 장소 증설 및 인력 증원 (10개 검사반 추가 설치 및 검사반별 6명 이상) ※ 징병제 하에서는 고의적 체력미달 시도할 경우 정확한 체력측정 곤란

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
	나. 향후 추진계획 ○ 심리검사 도구 정확도 향상 및 검사오류 최소화 • 인성검사, 인지능력검사 등 지속적 개선 - 군사고자 자료분석 등 사고관련 예측력 향상(KIDA협조) ○ 병역자원 감소추세 등 감안, 징병검사 체계개선 시 체력검사 도입 추진(중·장기 검토)

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
3. 신체검사 시 약시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병역처분기준의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	**가. 시정·처리결과** ○ 희귀질환인 모야모야병, 혈관염 판정기준 신설('15. 1월) • 모야모야병 : 5급(신설) • 혈관염에 의한 합병증 판정기준 - 8mm이하 관상동맥류 : 4급 - 8mm이상 초과하는 관상동맥류 : 5급 ○ 약시 판정기준 개정관련 국방부 보고('14.10.30.) • 국방부 주관 병무청, 의무사, 육·해·공군 의견 수렴 • 학생건강기록부 교정시력 0.2 이하자 반영여부 ○ 군병원과 병무청의 약시 판정기준 동일 적용 강조지시 • 병무청, 국군의무사, 육·해·공군(국방부, '15. 2.25.) ※ 약시 측정은 객관적인 방법이 없어 신검규칙 개정 곤란 **나. 향후 추진계획 : 해당사항 없음**

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
4. 동원령 선포시 국외체류 중인 예비군을 귀국조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	**가. 시정·처리결과** ○ 동원령 선포시 국외체류 예비군 귀국조치 실효성 제고 대책 수립('15. 1. 5.) • 외교부(재외공관)와 협업체계 강화 - 귀국명령서 E-mail 교부체계 확립, 효율적 업무추진 - 재외공관 병무직원 파견 추진(미국, 일본 등 주요국) • 국외체재 병역자원 대상 자체 홍보활동 강화 - 명예심·자긍심 고취를 통한 자진 귀국 분위기 확산 - 귀국명령 위반자 처벌사항 집중홍보 ○ 외교부와 국외체류 병역자원 관리업무 협업 강화(연중) • 병무주재관 파견, 국외자원 정보공유 추진 등 ○ '국외체류 병역자원 귀국제도' 홍보(연중) • 해외파견 신임무관 초청, 재외동포 방문 설명회 실시 • 책자·리플릿·뉴스레터 E-mail 등 활용 홍보 **나. 향후 추진계획 : 해당사항 없음**

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
5. 각 군의 현역병 모집선발기준과 평가방식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	**가. 시정·처리결과** ○ 각 군별 모집 선발기준 개선('14.12.26.) • 군 별 평가요소 폐지·추가 등 합리적 조정 - 폐지 : 신체등위별 평가(육군) - 추가 : 고교 출결사항(육군, 공군) • 각 군 성적반영 폐지 또는 비율 축소 - 폐지(기술병) ⇒ 자격·전공 위주 선발 - 축소(일반병) ⇒ 현행(45~100%) → 개선(35%) • 가산점 항목 정비 - 사회봉사, 헌혈 등 사회성 검증 항목 신설 - 자격증, 경력 등 각 군 특성 반영 • 면접 전형평가 기준 개선 - 추상적, 인권 침해적인 항목 삭제 등 ○ 각 군 평가방식 개선 • 각 군 상이한 평가요소 및 배점비율 동일 적용 - 일반병(100점) : 성적(35)+출결(45)+가산점(20) - 기술병(100점) : 자격(40)+전공(35)+출결(10) +가산점(15) **나. 향후 추진계획** ○ 선발기준 등 개선사항 시스템 구축('15.12.31.)

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
6. 동원예비군 훈련시 주특기별로 적소에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	**가. 시정·처리결과** ○ 적소특기 지정률 향상대책 수립 시행('14.10.21.) • 배정지역 합리적 조정 및 대체지정 신속 실시(병무청) • 주특기 등을 고려한 보직부여 철저(군부대) ○ 의원실 대면보고 실시('14.10.23.) ○ 적소 주특기 향상대책 및 보직부여 관련 국방부 건의('14.10.24.) ○ 국방부·각 군과의 의사소통 활성화, 동원제도 발전방안 지속 모색 • 병력동원 지정결과 분석회의 실시(년 2회) 등 ○ 적소특기 지정률 향상을 위한 주기적인 대체 지정 실시(월 2회) **나. 향후 추진계획 : 해당사항 없음**

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
7.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복무관리 및 자긍심 고취 방안을 강구할 것	**가. 시정·처리결과** ○ 제1회 사회복무대상 시상식 개최('14.10.16.) • 표창 : 복무기관(2곳), 복무관리직원(39명), 사회복무요원(34명) ○ 사회복무요원 체험수기집 "젊음, 향기로 피어나다" 발간·배포('14.10.17.) : 1만부(복무기관 등) ○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매뉴얼 제작·배포('14.11.26.) ○ 병역법령 개정·시행('14.11.10.) • 병가미사용자 연가가산(2일 이내) • 고충처리기한(30일) 명시 ○ '15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계획 수립·시행('15. 1.21.) • 복무부실 우려자 집중관리 및 맞춤형 교육 등 • 모범사회복무요원 발굴·표창, 권익보호 ○ 지역 복무관리센터 추가 개소 완료('15. 3.31.) • 울산, 순천, 천안, 진주센터(2→6곳 확대) **나. 향후 추진계획** ○ 사회복무요원 체험수기집 발간('15. 9월) ○ 제2회 사회복무대상 시상식('15. 11월)

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
8.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대기기간 중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	**가. 시정·처리결과** ○ 전직대기자 관리강화 방안 마련 시행('15. 2. 3) • 전직대기자 전직여부 확인(周 단위) • '전직대기기간 중 구직활동 내역서' 징구 • 구직활동 미흡자 전직대기기간 연장제한 등 **나. 향후 추진계획** ○ 전직대기 기간단축 등 복무관리강화 관련 병역법 시행령 개정 추진('15년 하반기)

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
9. 체육선수들의 병역특례로 발생하는 무임승차, 형평성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	**가. 시정·처리결과** ○ 예술요원 인정대회 축소 정비('15. 1. 1. 시행) • 52개 대회 139개 부문 → 48개 대회 119개 부문 (총 4개 대회 20개 부문 축소 정비) ○ 예술·체육요원 특기 활용 봉사활동 의무화로 병역이행 형평성 제고('14.12.30. 병역법 개정) • 병역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완료('15. 7. 1. 시행) - 병역법 시행령, 시행규칙 개정('15. 6.30.) <주요 내용> · 봉사대상 : 사회 취약계층, 미취학아동 및 청소년 등 · 봉사분야 : 공연, 강습(교육), 공익캠페인 등 · 봉사기간 : 34개월 의무종사기간 중 총 544시간 · 544시간 미실시한 경우 : 마칠 때까지 복무연장 - 예술·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개정('15. 7. 1.) **나. 향후 추진계획** ○ 체육요원 편입기준 등 제도개선 추진 • 제도개선 방향 - 단체종목의 무임승차 논란 해소 등 형평성 제고 • 추진 일정 - 정책토론 등 국민 의견수렴 실시('15년 8월) - 개선방안 마련, 관계기관 협의('15년 하반기) - 관련규정 개정 추진('16년)

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
10. '군 복무 경력증명서를 국방부와 협의하여 병무청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	**가. 처리결과** ○ '군 복무 경력증명서' 관련 유관기관 의견조회 및 회의 실시 • 국방부 의견 조회('14.10.15.) - 군 인사자료 연동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보안 문제로 병무청 발급 업무 불가 • 국방부 주관 회의 실시('14.11. 7.) - 병무청 의견 · 육·해·공군 장교/부사관/병으로 제대한 사람에 대해 '군 복무 경력증명서' 병무청 전담 발급 - 국방부 의견 · 병무청에서 전 군인을 대상으로 인사정보 관리 시 보안상 취약(보안정책과) · '18년 이후 국방인사정보체계상 '군 복무 경력증명서' 발급 환경 구축(인사정보화 TF) ※ 각 군별 표준화과정 거쳐 단계적으로 예비역 자료 전환 - 각 군, 해병대 의견 · 민원인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'군 복무 경력 증명서'를 지방병무청에서 발급(육군본부, 해병대) ※ 현행 : 인터넷, 방문, 우편 등 신청, 각 군 본부 발급 · 구체적인 경력사항은 각 군 본부 확인 필요, 민원인에게 적시제공 제한(해·공군 본부) ○ 국방부 의견 통보('14.11.12.) • 병무청 '군 복무 경력증명서' 발급은 곤란하며 각 군에서 발급하는 현 시스템 유지 - 활용가능한 구체적인 경력자료의 적시제공 제한 - 전체 인사자료의 연동 시 인터넷 해킹 및 군사 보안에 취약

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
	• 향후 추진 검토 - 통합데이터센터 서버 이관, 육군 병 자력관리 시스템 자료 연동 등 국방인사정보체계 개선 후 재검토(2020년 이후) ○ 의원실 방문 및 유선 설명('14.11.17.) • 추진경과 설명 및 회의내용 자료 제공 **나. 향후 추진계획** ○ 2020년 이후 국방부 시스템 체계 개선 후 재추진

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
11. 병무청 제반문제 등을 제보하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	**가. 시정·처리결과** ○ 공익제보자 보호 등 규정 관련 직원 교육 강화 • 전 소속기관 업무담당 교육('14.10.31./ 영상회의) • 자체 행정감사 기간 중 특별 교육 ('14.10~12월/ 경인청, 전남청, 강원영동청) ('15.1~6월/ 부산청, 경북청, 충남청, 강원청, 전북청, 경남청) **《관련 규정》** ‣ 내부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·보상에 관한 규정(병무청 훈령) ‣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(병무청 훈령) **나. 향후 추진계획** ○ 소속기관 회의 등을 통한 전 직원 지속 교육(연중) ○ 공익제보자 보호 규정 위반 시 엄정 조치

시정・처리요구사항	시정・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
12. 산업기능요원의 부실한 실태조사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	**가. 시정・처리결과** ○ 산재사망사고 발생업체 등에 대한 제도개선안 마련, 의원실 대면보고('14.10.23.) ○ 산재사망사고 발생업체 제재 강화를 위한 훈령 개정('14.10.29.) • 산재사망사고 발생업체 선정 제한(5년) • 산업기능요원 산재 사망시 업체 선정 제외 • 인원배정 제한기간 확대(2년→3년) **나. 향후 추진계획** ○ 산재사망사고 발생업체(○○정밀) 지정업체 선정 취소(예정) • 인원배정제한 후 2년이상 미채용 사유 선정취소 ('15. 12월) ○ 지정업체 실태조사(평가)시스템 D/B 구축 • 분석설계('14년), 시스템 구축('15년)

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
13. 병역의무 회피를 위한 해외불법 체류자 증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	**가. 시정·처리결과** ○ 미귀국자 발생 억제를 위한 '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'제도 도입 • 병역법 제81조의2 신설 개정('14.12.30. 공포, '15. 7. 1. 시행) • 병역법시행령 제161, 162조 신설 개정('15. 7. 1.시행) • 병무청 훈령 「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처리규정」 제정('15. 7. 1.시행) ※ 국외 불법 체류자, 징병검사, 징·소집 기피자 등 ○ 미귀국자 발생 예방 활동 전개 • 허가기간 만료 90일전 기간만료 예고 및 귀국 독려 ※ 본인 및 가족 연락처 등 기록관리 철저 • 여권발급시 병역안내문 스티커 부착 ○ 미귀국자에 대한 행정제재 철저 • 사법기관에 고발 및 여권발급 제한 • 입국시 출국금지 및 의무부과 • 40세까지 행정제재(국내취업·관허업의 인허가 등 제한) ○ 병역의무 자진이행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• 해외교민 사회 방문 병무행정설명회 등 실시 • 명단 공개제도 적극 홍보로 병역자진이행 유도 **나. 향후 추진계획** ○ 국외 병역자원 스마트 소통체계 구축('15년) • 모바일(앱)을 활용한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 안내 등

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
14. 공중보건의 등 대체복무자의 형사처분 후 병역이행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것	**가. 시정·처리결과** ○ 8일 이상 무단이탈 사유 편입 취소자 병역의무 부과 제도 개선(병역법 개정, '14.12.30.) • (종전) 사회복무요원으로 의무부과 • (개정)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(원신분)으로 의무부과 ○ 병역법 시행령 개정('15.7.1. 시행) **나. 향후 추진계획 : 해당사항 없음**

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
15. 신체검사 1급과 2급 자원이 의경이나 소방 등 비전투 분야로 집중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	**가. 시정·처리결과** ○ 신체등위 1, 2급자 제한방안 협의('14.11. 6./ 11. 20.) • 국방부, 병무청, 경찰청, 해양경비안전본부 ○ 신체등위별 균형선발 요청('14.11. 21.) • 경찰청, 해양경비안전본부, 중앙소방본부 ○ 의무경찰 지원 신체기준 완화 회신(경찰청, '14.12. 9.) • 신장·체중, 흉위 등 기준 폐지 • 시력, 청력 등 의무경찰 지원기준을 징병검사 기준으로 일치 ※ 현재 신체등위 2, 3급자 일부 지원 불가 ○「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」개정('15. 6.30.) * 신장·체중, 흉위 기준 폐지, 안과 등 기준 조정 **나. 향후 추진계획 : 해당사항 없음**

시정・처리요구사항	시정・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
16. 장기 해외체류에 따른 고령을 이유로 군 면제자 수가 증가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	**가. 시정・처리결과** ○ 의원실 방문, 제도 설명('14.10.17.) • 장기 국외 체류에 따른 고령 사유 병역면제자 비율 - 99.4%가 합법적 병역감면자인 국외이주자, - 국외 불법체재자는 0.6%에 불과 • 국외 불법체재자 처벌규정 - 형사고발(3년 이하의 징역) - 40세까지 국내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제한 등 행정제재 ※ 병역면제 이후에도 입국 시 형사처벌 ○ 국외 불법 체류자 명단 공개 제도 적극 홍보 **나. 향후 추진계획 : 해당사항 없음**